

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0. 9. 30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9월 8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년 9월 8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41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2000. 9. 29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윤희문)

가. 제안이유

이천시포상조례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시장이 행하는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포상은 상금, 상패,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음(안 제8조).
-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은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포상적용의 세 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함(안 제9조제2항)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윤순성)

-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직원,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시상금,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도록 하고,
- 포상은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·증진에 기여한 자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시소속직원에게 골고루 수여토록 포상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9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
고성옥 위원장의 4인 제출

나. 수정이유

-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부 정비한 등 조례의 개정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 조문내용을 정비함.

다. 수정주요골자

- 불필요한 조문의 단서규정을 삭제함(안제9조제2항).

7. 심사결과 : 일부 수정의결(만장일치)

8. 기타사항 : 없 음

- ※ 첨부 : 1. 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9조제2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포상절차) ①(생략)</p> <p>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표창장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. <u>다만, 시장은 포상적용의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~④(생략)</p>	<p>제9조(포상절차) 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표창장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(단서 삭제)</p> <p>③~④(생략)</p>